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: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6 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곽석철(6573)/ 의무팀장 김철욱(6542)/ 팀원 조시형(6536)/ E-mail: kmamedi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-03440호
시행일자 2026. 6. 17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개정·공포 안내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, 2026. 6. 17., 일부개정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표 1 제1호의 운용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란 중 "전속"을 "비전속"으로 하고, 같은 호의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.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,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*붙임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제1179호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